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 확대 >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71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 확대 >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68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개요	1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
II . 검토의견	3
□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 · 학령 확대	3

I. 개요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2024. 6. 26.

다. 회부연월일: 2024. 6.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또한,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다 장기적인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자녀 돌봄·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7호).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2024. 6. 26.

다. 회부연월일: 2024. 6.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또한,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다 장기적인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자녀 돌봄·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7호).

II. 검토의견

☐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 확대

개정안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하 “교원 등”이라 함)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면서,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확대하여, 교원 등의 자녀 돌봄·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제44조제1항제7호, 사립학교법 개정안 제59조제1항제7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44조(휴직) ① ----- ----- ----- -----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말한다)----- ----- -----
7의2. ~ 12. (생략) ② ~ ⑤ (생략)	7의2.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 ----- ----- ----- ----- ----- ----- ----- -----

현행	개정안
야 한다. 1. ~ 6. (생략)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 1. ~ 6. (현행과 같음) 7.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말한다)----- ----- ----- -----
7의2. ~ 13. (생략) ② ~ ④ (생략)	7의2. ~ 1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은 교원 등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조항은 교원 등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을 1세 미만(1차 개정)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2차 개정)에 이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3차 개정)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음.

[표 1]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 개정 내역

구분	최초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내용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세 미만인 자녀 양육 또는 여교원의 임신·출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양육 또는 여자 교원 등의 임신·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또는 여자 교원 등의 임신·출산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3458호, §44①7 1981.11.23. 개정 1982. 1. 4. 시행	법률 제4841호, §44①7 1994.12.31. 개정 공포일 시행	법률 제8528호, §44①7 2007.7.19. 개정 2008.1. 1. 시행	법률 제10634호, §44①7 2011.5.19. 개정 공포일 시행
사립학교법	법률 제4226호, §59①7 1990. 4. 7. 개정 공포일 시행	법률 제5274호, §59①7 1997. 1.13. 개정 1997. 4.14. 시행	법률 제8529호, §59①7 2007.7.19. 개정 2008.1. 1. 시행	법률 제11216호, §59①7 2012.1.26. 개정 공포일 시행

자료: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중 해당 조항 정리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보다 장기적인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면서, “자녀의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확대하여, 교원 등의 자녀 돌봄·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이 확대될 경우, 교원 등은 동일한 휴직 기간 내에서 보다 폭넓은 범위의 기간 중 휴직이 필요한 시기를 선택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으므로 양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규정하고, “자녀의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자녀의 연령·학령을 어느 시점까지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현행 법령에서 육아휴직 수당은 최대 1년 동안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액은 휴직 시작일 기준 월 봉급액의 80%로 산정하되 하한을 70만원, 상한을 15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6개월째까지 보다 높은 상한이 적용되며(1개월째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증액하여 6개월째 450만원으로 산정),¹⁾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보충을 위해 결원보충, 기간제교원 임용 등을 할 수 있음.²⁾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1개월째는 200만원, 2개월째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 확대로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 및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³⁾

아울러, 교육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⁴⁾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민간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2) 「국가공무원법」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① 공무원이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휴직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최종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제7호의3·제8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71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참고로 최근 3년간(2021~2023년)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현황은 아래와 같음.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국·공립학교	16,811	16,995	15,514
사립학교	1,257	1,363	1,321
합계	18,068	18,358	16,835

주: 1. 해당연도 4월 1일 기준임

2. 유치원, 초·중등학교 정규 교원 기준(기간제교원 및 강사는 제외)

자료: 교육부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필요가 있으므로,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을 확대하는 내용(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을 포함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위원회 및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심사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2]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 확대 관련 법률안 회부 현황

구분	법률안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부일	소관 상임위원회
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804	김선교의원	2024.6.21.	2024.6.24.	교육위원회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810	김선교의원	2024.6.21.	2024.6.24.	
		2200975	한정애의원	2024.6.26.	2024.6.27.	
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347	한정애의원	2024.6.11.	2024.6.12.	행정안전위원회
		2200818	김선교의원	2024.6.21.	2024.6.24.	
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345	한정애의원	2024.6.11.	2024.6.12.	
		2200817	김선교의원	2024.6.21.	2024.6.24.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386	이수진의원	2024.6.12.	2024.6.13.	환경노동위원회
		2200567	한병도의원	2024.6.18.	2024.6.19.	
		2200755	김선교의원	2024.6.20.	2024.6.21.	
		2200883	한정애의원	2024.6.24.	2024.6.25.	
		2201386	박정의원	2024.7.4.	2024.7.5.	
		2201521	김미애의원	2024.7.9.	2024.7.10.	
		2201936	강훈식의원	2024.7.18.	2024.7.19.	
		2202530	박홍배의원	2024.8.2.	2024.8.5.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각 법률안 내용 정리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교원 등의 양육환경 보장 등을 위해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을 확대하는 정책 및 법 개정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학생의 수업 등 교육과정 정상운영 보장을 위한 기간제교원 충원 등 고려, 타 직종과의 형평성 제고, 사회적 공감대 마련 등의 사전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확대⁵⁾로 학교가 책임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어, 육아휴직 수요가 폭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

다만, 사립학교 중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제외 학교에 대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보충인력 인건비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⁶⁾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서는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의 가족돌봄휴직⁷⁾과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9호

5) 늘봄학교 지원 대상: 2024년 초등학교 1학년 → 2025년 초등학교 1~2학년 → 2026년 초등학교 1~6학년
(교육부,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2024. 2.)

6)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충당하지 못하여 발생한 부족액을 공립학교 수준으로 재정 지원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43조, 각 시·도교육청 조례 등에 따라 운영됨.

*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 = 재정결함보조금

*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 이상인 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7)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9.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의 가사휴직⁸⁾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6개 교육청⁹⁾은 보충인력 충원 대책 없이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을 확대할 경우 교육과정 운영 차질 등이 예견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중 경기도 및 충청북도 교육청은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직과 가사휴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육아휴직 확대로 대상자들이 일시에 휴직할 경우 교원 인사관리 및 결원보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률안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경기도 교육청은 이견이 없으나 관할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10개소는 개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 등에 대한 재정지원과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지원방안 보장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대체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률안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8)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참고로 개정안은 나이에 ‘만’을 표기하고 있으나, 법령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과 공문서 등 행정에 관하여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신설된 「행정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만’ 표기는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¹⁰⁾

문 의 처
02)6788-5189

10) 「행정기본법」(법률 제19148호, 2022.12.27. 일부개정, 2023.6.28. 시행)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